

	신규 전임교원 연봉책정 지침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20. 03. 01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행정지원처

제1조(목적)

목포과학대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의 「교직원 연봉제 규정」에 의거하여 신규임용 전임교원의 연봉책정 업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

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연봉계약으로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으로 한다. 다만, 탁월한 교원을 신규 채용하기 위해 총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 지침의 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기준으로 연봉을 책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제3조(연봉책정 원칙)

- ① 연봉 책정은 대학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책정한다.
- ② 연봉의 책정은 신규 임용자의 임용 전 학력,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.
- ③ 동일한 학력이나 경력자에 대해서도 대학에서 요구하는 능력 보유 여부 및 대학(학과) 발전 기여 가능성을 평가하여 연봉을 달리 책정할 수 있다.

제4조(연봉책정 방법)

- ① 신규 연봉제 전임교원의 연봉은 (별지서식1) 신임 교원 기본연봉표와 (별지서식2) 연봉평가 심사표에 따라 하한액을 원칙으로 책정한다. 다만 임용 전 학력, 경력 및 학과의 특수성, 대학의 발전 기여 가능성을 평가하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.
- ② 연봉제 정년트랙교원과 비정년트랙교원의 신규 채용시 연봉책정 및 기본 연봉표와 연봉평가 심사표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봉조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한다)를 둔다
- ③ 연봉평가는 신임 교원 기본연봉표와 연봉평가 심사표에 의거하여 신규 채용시 제출한 인사서류를 참고하여 항목별로 평가 한다.

제5조(관련규정 준용)

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직원 연봉제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 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서식1)

신임 교원 기본 연봉표

(단위 : 원)

구 분		하한액	상한액	비 고
정년트랙 전임교원	교수	49,000,000	연봉조정위원회에서 별도 정함	기본보수의 변동성 수당(가족수당, 학비보조수 당, 직책수당) 은 별도 지급.
	부교수	39,000,000	50,000,000	
	조교수	28,000,000	40,000,000	
비정년트랙 전임교원		26,000,000	40,000,000	대학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르게 책정할 수 있음.

(별지서식2)

연봉평가 심사표

채용학과 : _____ 성명 : _____

구분	연봉평가 심사 기준	배점	심사점수	비고
연구(학위) 실적 (30)	200% 이상	30		연구실적의 질에 따른 연봉조정심사위원의 심사
	150이상~200% 미만	20		
	100이상~150% 미만	10		
	100% 미만	0		
	기준 1. 평가대상 연구실적 : 최근 5년 이내 의 논문, 전공 역·편·저서 2. 학술지 등급별 가중치 -박사학위 논문 200% -석사학위 논문 100% -국제학술지 150% -한국연구재단 등재지, 등재후보지: 100% -일반 학술저널 등 70% 3. 저서 100% 4. 저자수(n)에 따른 연구실적물 인정환산율 -단독저자 : 100% -2인 70%, 3인 50%, 4인이상 1/n			
교육 경력 (20점)	5년 이상	20		교육 경력기관, 직위에 따른 연봉조정심사위원의 심사
	3~5년 미만	15		
	1~3년 미만	10		
	1년 미만	5		
	0년	0		
산업체 경력 (20점)	산업체 경력 5년 이상	20		산업체 근무기관, 직위, 업무난이도에 따른 연봉조정심사위원의 심사
	산업체 경력 3~5년 미만	15		
	산업체 경력 1~3년 미만	10		
	1년 미만	5		
	0년	0		
학과발전 및 잠재역량 (30점)	① 자기소개서에 기초한 교수로서의 자질, 인화정도, 협조성, 리더십 등 ② 학과발전계획에 기초한 대학 및 학과 발전기여 가능성, 차별성, 잠재력 등	10 ~ 30		연봉조정심사위원의 재량으로 부여가능하나, 신규채용 지원서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성평가
합계		100		

연봉조정심의위원회 위원 :

(서명)